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상시 접근 가능장소 설치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1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상시 접근 가능장소 설치	3

I. 개요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31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23인
- (2) 제 안 일 : 2025. 12. 17.
- (3) 회 부 일 : 2025. 1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설치방법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제한적임.

반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5만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 또한 일과 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에 일반인이 접근하거나 진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 내지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등을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2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상시 접근 가능장소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응급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 --. <u>이 경우 응급장비는 응급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u>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6의3. (생략)	6의2.·6의3. (현행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¹⁾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AED”²⁾)를 누구나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응급상황에 AED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현재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 지침)³⁾을 통하여 AED를 “필요 시 누구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장시간 출입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현행의 지침이 아닌 법률로써 규율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AED가 개방되어 있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거나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것과 같은 부적정한 설치·관리 사례가 지자체 등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있음⁴⁾.

1)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구 자동제세동기)

2)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는 AED 외에도 수동심장충격기 등이 있으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보다 용이한 AED가 공공장소 등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본 검토보고에서도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AED를 사용하기로 함.

3)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보건복지부 지침), 2024. 5.

4) <감사 주요 지적 사례>

- 경기도: 감사대상 479개소 중 AED가 상시 개방되어 있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설치장소가 부적정한 곳이 71개소(14.8%), 보관함 없이 보관되거나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경우가 231개소(48.2%)임. (자료: 경기도 감사위원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2020. 8.)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통시장 2층 사무실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져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장소에 AED가 설치된 사례 (자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5. 12.)

< AED 설치 장소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 설치 장소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 시설의 입구나 엘리베이터, 계단 근처와 같이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
 -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 필요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시간 출입 가능한 장소
 - * 설치 장소의 운영·영업 시간을 고려할 것

※ 예시

- 입주민이 많은 대단지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 입구 근처에 설치(잠금장치가 없도록 함) 및 동별 설치
- 넓은 면적의 체육관, 유원시설 등 → 눈에 잘 띄는 출입구 또는 계단 근처, 사람 이동이 많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매표소 또는 안내소
- 대형 쇼핑몰 → 엘리베이터 근처마다 설치, 안내지도 등 위치 표시 필수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보건복지부 지침), 2024. 5.

□ 다만, 개정안의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⁵⁾는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AED를 상시 접근 가능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이 신설될 경우, AED의 상시 접근 가능장소 설치 의무의 위반 또한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의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해당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부칙에 관한 사항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AED를 설치한 자(이하 “기설치자”)에 대하여도 개정안을 적용할지에 관하여 부칙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⁶⁾.
-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기설치자에 대하여도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AED의 재설치 장소 선정 및 이동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법령체계 및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법 제47조의2제5항⁷⁾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ED의 접근가능성과 함께 응급상황에 실제 사용 가능하도록 상시에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6) 기설치자에 대하여도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기설치자는 개정규정 시행 후 일정기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기설치된 AED를 상시 접근 가능장소에 설치하도록 부칙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반면 기설치자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AED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AED 설치 시설의 특성에 따라 누구나 상시적으로 해당 장비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 응급상황 대처 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범위 및 설치 위치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심폐소생협회) 이견 없음.

문 의 처
02)6788-5509